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40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맹건의 출입금지 장소 확대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춘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8. 19.

다. 회 부 일 : 2024. 8.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기구,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어린이,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확대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기구 및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의료기관 및 약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u><신설></u>	9.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8. (생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사람의 생명·신체나 다른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맹견의 소유자등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¹⁾

개정안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해진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 규정하여 맹견의 출입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출입금지 장소를 확대하여 개물림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맹견 소유자등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약국

1)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의 경우 개물림 사고 취약자가 아닌 일반인도 다수 출입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49)”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27